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최 기 남\*

요 약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한 위협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 Study on Preventing Retaliation against Crime Victims

KeeNam Choi\*

ABSTRACT

The guarantee of citizens' safety from crime is the reason for a nation's existence according to the social contract, and it is also a salient task in securing the citizens'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which is a constitutional right expressing the nation's duty to its citizens. First, a procedure must be made mandatory that corresponds to the Miranda rule applied during the arrest of criminal suspect, which verifies whether there exists a risk of retaliatory crime to the victim of crime, crime reporter, or witness following their report of a crime or testimony. A measure to punish those who violate this should be devised. The second is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systems,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persons subject to protection from retaliatory crimes under the current law and strengthening information protection. Third, a retaliatory crime risk evaluation index must be developed, and the evaluation results must be quantified to clearly state measures and responsibilities, in detail, for personal safety at each level of intensity. The fourth is the expanded implementation of proactive personal safety measures for victims of crime and witnesses, as well a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dvanced techniques. The last is a change in the perceptions of those working for the judicial body. From the initial investigation stage of the crime to the diagnosis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retaliation perpetrated on an ex-convict through psychological tests, systems of general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must be established.

**Key words : victims of crime, witnesses, retaliatory crimes, retaliatory crime risk evaluation index, personal safety measures**

접수일(2016년 12월 20일), 게재확정일(2016년 12월 26일)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본 논문은 2015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지원으로 제작되었음

## 1. 서 론

범죄란 실질적으로 사회적 유독성을 지닌 행위나 문화규범에 반한 행위를 말하며, 공동체의 평온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도의 규제를 필요로 한다. 이런 범죄현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며 늘 있어 왔고, 범죄 그 자체는 공동체 내의 여건 변화와 함께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의 하나로 치부되기도 한다[1]. 인류사회는 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오고 있으나 오히려 현대사회의 범죄현상은 점차 흉폭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범죄대책에 특별한 처방이나 획기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의 빠른 산업화의 진행은 정보, 통신, 교통 등 생활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이중적 위험사회를 불러왔고, 황금만능주의적사고, 범죄유해환경의 만연 등 범죄발생 여건의 다양화와 함께 범죄의 양상 또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심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2].

현대 우리사회는 시민적 요구가 “풍요에서 안전”으로 전환되었고, 국가의 존립 목적에 의한 기능 중 안전서비스가 최우선 국가기능이며 당면한 시민적 요구로 대두되고 있다[3]. 국가는 근본적으로 사회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관계에 의해 범죄문제 해결을 위한 형사사법정책을 제시하고 시민의 안전한 삶의 여건을 보장하여야만 한다.

국가형사정책(criminal policy)이란 범죄를 방지하고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일반사회의 범죄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순화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국가기관의 일체의 시책을 말한다[4]. G. Kaiser는 “형사정책은 가장 이상적인 범죄통제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인 전략, 전술 및 제재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5]. 따라서 형사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범죄를 대상으로 범죄방지 이념에 봉사할 합리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실제적 진실과 정확한 현황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에 근거한 범죄현상과 원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얻어진 범죄학적 산물에 기초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형사정책학은 범죄현상에 대하여 기존 형벌체계가 현재의 범죄문제에 대처하는 수단 방법으로서 유효한지를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및 행형제도 등에 합당한 형사입법과 제도도입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6]. 범죄를 방지하고 공동체의 평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과 관행은 서양의 함부라비법전이나 우리 고대사의 팔조금법 등에 나타나있는 것처럼 고대로부터 행해 왔다. 근대사회에 이르러 국가와 귀족정치가 형성되면서 공식적인 형사사법제도가 발전되어 국가형벌권이 확립되었고, 범죄대책은 형벌을 위주로 한 범죄자 중심의 형사사법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현대까지의 국가의 형사정책은 가해자인 범인을 중심으로 범죄행위자의 처벌(Punishment)이나 처우(Treatment)

가 범죄억제대책의 전부를 차지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7]. 20세기 후반을 넘어 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실제적 접근을 위한 연구의 대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범죄학자들의 산물이 축적되고, 전통적인 형사사법정책과 시스템이 범죄피해자가 당하는 고통과 피해회복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으로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보상, 재 피해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 피해회복과 공동체로의 정상적인 복귀 등을 위한 대책이 연구, 제시되고 법제화되게 되었다[8]. 우리나라는 이런 노력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되었지만, 2010년 비교적 선진화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 발효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에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6]. 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보상, 형사절차에서의 권리보호와 지원, 회복을 위한 국가 사회단체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특히 형사과정에서 보복범죄로 인한 재피해의 발생과 그 위협에 의한 실제적 진실의 왜곡 등 사법정의와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 신고자와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마스크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에 관한 사건 보도는 범죄에 관한 시민 안전의 기대를 떠나 발생한 범죄의 신고나 목격사실에 대한 증언조차 불안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감금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50대 남성이 피해자를 다시 유인 감금하고 폭행 및 가짜 다이어나이트로 폭파위협, 고문하는 사건 등 보복범죄가 급증하고 흉폭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에 대한 형벌 자체가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죄의 신고나 범죄현장에 대한 증언은 언제나 위협이 따름으로 용기가 요구된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들이나 증인들이 가해자와 악연의 사슬에 얽매어 2중, 3중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상의 보호망을 더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범죄는 예방이 최우선 대책이나 발생한 범죄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범죄에 대한 징벌 또한 국가형사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보복범죄는 이를 왜곡시키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보복범죄는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작동을 저해하는 범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세부대책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도록 확인되는 이중삼중의 장치가 요구된다 하겠다.

본 논문은 발생범죄의 형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학적 측면에서 범죄피해자와 증인이 보복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비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복범죄에 대한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논문의 검토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현재 우리의 보복범죄 발생경향과 시행 중인 법, 제도적 대비방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재 피해를 근절하고, 자유로운 신고와 증언을 통해 범죄의 실제적 접근성의 확보, 범죄대책의 효율성 증대, 사법정의의 실현을 통해 사법정책의 지향점인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사법기관의 인식변화와 노력, 법 제도와 관행의 개선, 사회단체의 노력

등이 포함된다.

## 2.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이해

### 2.1 범죄피해자 보호 대한 관심과 학문적 접근

고대로부터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과 관행은 서양의 함무라비법전이나 우리 고조선시대사의 팔조금법 등에 나타나있는 것처럼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적 응징에 관심을 두고 피해자 중심으로 행해왔다. 또한 공식적인 처벌 이외로 피해자의 동해 보복에 의한 私刑이 용인되었다[9]. 이런 관행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과 공동체 규칙 위반에 대한 형벌을 병행하는 제도로서 “피해자의 황금시대”이라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제도였다[6]. 특히 함무라비법전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력이나 신분 등의 논리에 따라 공정한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었겠으나, 공동체 규칙 위반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와 私刑에 의한 보복적 응보형 사법정책의 징후와 함께 피해자의 용서를 전제로 “공평성의 회복(Restoration of Equity)”을 지향하는 피해자 권리보호가 나타나고 있다[8]. 이와 같은 공적, 사적형벌의 공존시기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근주국가의 출현 이후까지도 상당한 기간 존재했다. 중세말엽에 이르러 근대사회의 국가와 귀족정치가 강력해지면서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공식적인 형사사법제도가 발전되어 국가형벌권이 확립되면서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등으로 대변되는 범죄자 중심의 사법제도로 대체되었다[10]. 이는 범죄에 대한 형벌권을 국가가 대신하며 실제 범죄피해자는 소외되었음을 의미한다. 국가체계의 형사정책은 가해자인 범인을 중심으로 범죄행위자의 처벌(Punishment)이나 처우(Treatment)가 범피억제대책의 전부를 차지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7]. 또한 피해자의 원상회복이나 지원, 인권보다는 거대 국가권력으로부터 범죄인의 권리와 처벌에 대한 공정성, 그 처우가 우선 고려대상이었던 것이다.

근세에 이르러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1940년경 Hans von Hentig, Mendelson 등 초기 범죄피해자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1956년 멘델손(Benjamin Mendelsohn)의 논문 “신 생물-정신의학-사회과학, 피해자학(A Branch of Bio-Psychosocial Science, Victimology)”에 의해 피해자의 정의와 학문적 범주가 소개되면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범죄피해자들의 범죄피해유발(Victim Movement)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점차 사회제도나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게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인식 확산되어 1960년대에는 서구 선진국에서 범죄피해자보상제도가 마련되었고, 1970년대에는 북미 유럽 중심으로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1980년대에는 형사절차법상에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99년 UN 경제사회위원회는 “형사사법에 있

어 조정 및 회복적 사법의 실천과 발전방향”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국가별 사법정책에 반영되게 되었다. 현재는 형사절차상의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회복적 사법의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많은 민간단체가 조직되고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9].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핵심적인 내용은 재피해의 방지 및 피해의 복구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사죄, 신고자나 증인을 포함한 범죄피해자의 보복범죄로 부터의 안전확보를 지칭하며, 회복적 사법과정을 통한 정상사회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 2.2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체계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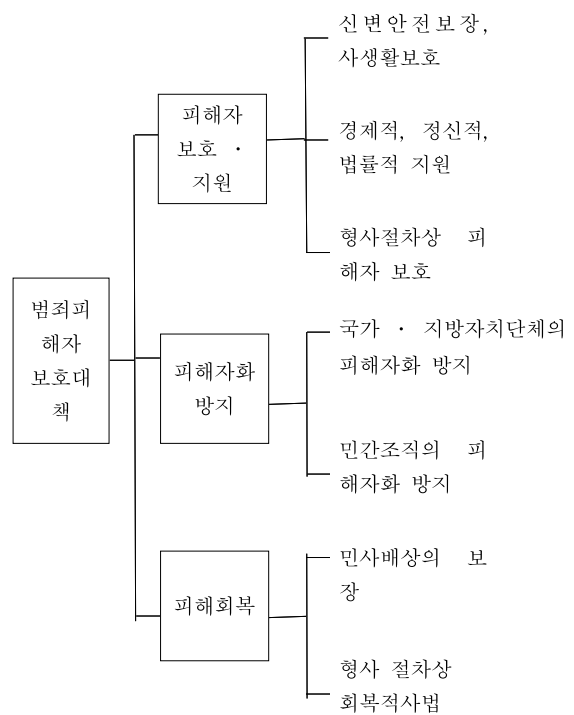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역사기록에 의한 형사사법 제도상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작용은 BC 4C-2C경에 성립된 고조선의 八條禁法の 속죄와 배상의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AD 1C 경한반도와 북만주 일대에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가 출현하게 됨으로서 강력한 왕권을 배경으로 태(苔) 장(杖) 도(徒) 유(流) 사(死) 등 형벌을 규정한 공형벌제도를 갖춘 법령체제가 갖추어 졌다[6]. 그러나 왕권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근대국가 울릉체계는 민사와 형사의 구별이 없이 국가 대명령이나 지방 관습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형벌이 관청이나 관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국가의 재정이나 부패 등으로 금전이나 물품에 의한 속죄형제도가 성행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보다는 범죄대책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이나 국가가 대신한 속죄금과 노역이 흥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래에 이르러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학이 사회과학의 영역으로 도입된 것은 1970년대이고, 1980년대에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87년 헌법에 기본적인 개념이 도입되었고 범죄피해자구조법(법률 제3969호)이 제정되었다. 1992년 한국피해자학회가 설립되고 연구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 이후 연구성과가 반영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작으로 청소년, 가정폭력 등과 관련한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된다[11]. 또한 1991년 민간조직인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문을 열고 성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상담과 지원시설 수가 급증하고 전문화된 피해자 지원이 빠르게 확산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학계의 연구가 활발해 지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당위성이 인식되었고 회복적 사법제도의 필요성이 긍정되었으며, 2003년 이후 형사사법기관이 각종시책과 기구, 위원회, 지원시설을 경쟁적으로 설치 운용하게 된다. 관련 법규도 급속하게 정비되어 범죄피해자구조법과 소속법이 개정되고, 대검찰청이 화해중재를 도입하고, 형사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2010년 범죄피해자구조에 관련된 법률을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 규율하기에 이르렀고 형사소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6]. 이로서 우리의

형사사법제도상의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는 늦게 도입된 감이 있으나 비교적 선진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형사사법절차 현장에서의 관계자의 인식과 제도의 시행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실제적인 구조는 관련조치의 통계수치상으로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며 암수 피해의 주요요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장애인 여성 보복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취소 소송에서 패했다.[12]는 언론보도는 관련인식의 정도를 잘 대변하고 있다.

### 2.3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이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자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해 주고 필요한 경제적, 법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범죄발생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회복적 사법 즉 피해자의 권리를 확립하기 위한 공사의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이는 평온한 가운데 인간적인 삶을 누릴 시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국가의 기초적 의무이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필요성은 형사사법의 정의 실현으로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서 범죄피해에 대한 실체에 접근하게 되며, 실효성있는 형사사법 정책을 시행하고 시민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6]. 이의 궁극적 목적은 회복적 사법을 통해 범죄발생환경을 순화해 나감으로써 현대사회의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체계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범죄피해자가 되는 것을 줄여나가기 위한 각종 예방활동과 범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둘째는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사생활보호 등의 안전활동과 경제적, 법적, 심리적 지원, 그리고 수사, 재판, 행형의 형사절차상에서의 재피해 방지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법 제도상의 보장이며, 셋째는 회복적 사법에 의한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과 용서를 통한 화해를 이룸으로 법공동체의 범죄환경을 근본적으로 순화해나가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두 번째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에서 신변안전을 위한 보복범죄에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도[6]

## 3. 보복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 3.1 보복범죄의 개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9에 따르면, 보복범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한 살인,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등 폭력범죄를 의미한다. 또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13]. 또한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이나 자료제출을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같다고 하였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의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당국의 보복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의 정립과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증가하는 보복범죄의 현실에 대한 표피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경찰이 현재 작성하는 범죄원표에는 해당범죄가 보복의 목적으로 행해졌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따라서 정확한 보복범죄의 실태와 피해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며, 또한

보복범죄에 대한 집계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경찰과 검찰이 각각 다른 통계수치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체 범죄통계에서 보복범죄의 정확한 분류와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보복범죄의 양태와 특성 등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관련실태가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14].

### 3.2 보복범죄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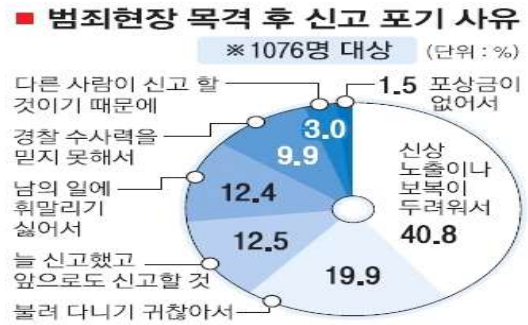
대검찰청 자료를 분석해 보면 특가법상의 보복범죄로 처벌된 사범은 2010년의 175명에서 점점 증가하여 2014년 406명으로 2.5배로 늘어났으며[15], 늘어나는 보복범죄의 현황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보복범죄 건수[15]

범죄피해자, 신고자,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의 건수는 사법기관의 통계상으로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유사 성격의 범죄로 미국에서는 범죄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2013년에만 텍사스주에서 인종주의 폭력 사건을 함께 수사했던 검사 2명이 두 달 사이 잇따라 총에 맞아 사망한 바 있다. 미연방수사국(FBI)과 주 경찰은 두 사건을 동일범의 연쇄 보복 범죄로 보고 있다[16].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사건의 처리 과정이나 재판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들이 변호사, 판사 등 법조인의 안전을 위협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5월 18일 성명서를 통해 "현대 형사법체계에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사적보복행위는 사법체계의 뿌리를 흔들고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도 있다[17].

또한 검찰의 2011년 범죄 분석자료에 의하면 강도 강간, 상해, 협박,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을 위반으로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중 피해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자의 미신고 사유 중 보복의 두려움이 11개 사유 중 5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8]. 또한 2011년 9월 서울신문과 민간연구소(여의도리서치)가 성인 남녀 107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범죄 목격 시 87.5%가 신고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의 40.8%가 신상노출이나 보복범죄의 두려움으로 나타났다[18]. 상세한 내용은 (그림3)과 같다



(그림3) 범죄현장 목격자 신고포기 사유[18]

대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보복범죄의 유형은 협박이 과반을 점하고 있으며, 주취폭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5]. 분석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4)와 같다.



(그림4) 보복범죄의 유형[15]

보복범죄의 발생시기는 수사초기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66.6%에 달하고 있다[19]. 구체적 내용은 (그림 5)와 같다.

범행 시기	보복범죄 발생건수(비율)	
수사 개시 전 (6%)	신고/고소 저지 목적	
수사 초기 단계 (70%)	신고/고소 또는 피의자 조사 직후 (대부분 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된 직후)	78건 (66.6%)
	참고인 전술 등 수사 중	4건 (3.4%)
재판 단계 (16%)	재판 중	8건 (6.8%)
	선고 직후 (대부분 집행유예 석방 직후)	11건 (9.4%)
형집행 단계 (7%)	출소 직후	9건 (7.7%)

(그림5) 보복범죄 발생 시기[19]

### 3.3 보복범죄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정책상 제도적 시행

현행 보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로는 대표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을 들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검찰과 경찰이 성폭력이나 마약,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에 한정하여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를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나 증인이 보복범죄피해의 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에 확대 적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20]. 근래 검찰의 홍보자료를 통해 보도된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검찰의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제도 및 시행실적을 종합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제도 및 시행 실적[21]

제도	내용	기간 및 실적	비고
비상호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복우려가 있는 피해자-신고자-증인에게 비상호출기를 제공함으로써,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장치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와 경찰서에 위치통보가 이루어져 즉시 출동하여 신변보호</li> <li>검사가 직권 또는 피해자가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신청→결정→지원</li> </ul>	2012.5.부터 2013.5.까지 861명 지원	
이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자가 보복의 우려 등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이사비) 지원</li> <li>검사가 직권 또는 피해자가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신청→결정→지원</li> </ul>	2012.5.부터 2013.5.까지 199건 지원	1억 5,600만원
가명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거 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조서 등은 가명으로 작성하여 피해자의 신원노출의 방지</li> <li>검사의 직권 또는</li> </ul>	2012년 235건 2013년 5월 91건	

	피해자가 담당검사에 요청		
피해자보호시설(안전가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대범죄의 신고자, 증인과 그 친족 등이 보복의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경우, 대검이나 일선 검찰청이 마련한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보복의 위협으로부터 보호</li> </ul>	전국 9개 시설 운용	수시주택임대제공
법정동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복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등이 범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 피해자 지원관 또는 소속직원과 함께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하고 함께 검찰청에 복귀하여 증인의 신변안전을 확인하고 귀가시킴</li> </ul>	2012년 693건 2013년 5월 319건	
석방통지 등 각종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해자가 구속적부심사, 구속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석방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석방통지 *피해자 통지는 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상황통지(석방통지) 등이 포함됨</li> </ul>	2012년 81,029건 2013년 5월 41,369건	

### 3.4 보복범죄의 영향과 문제점

보복범죄는 국가 사법기관의 발생된 범죄 진압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치 못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피해로서, 피해자에 대한 범익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온전한 형사사법기능의 작동을 저해하고, 국가가 독점적 형벌권을 통해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는 현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22]. 보복범죄로 인하여 야기되는 범죄대책관련 악순환이 야기되는 문제점을 정리한다면 우선 범죄피해자나 신고자, 증인에 대한 재피해로 사법정의 실현의 실패이다. 다음은 범죄 신고와 증언의 왜곡으로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는 형사절차상의 오류를 초래한다. 이는 업무방해와 재판결과의 공정성에 문제를 야기한다. 사법절차나 결과의 공정성 문제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이는 범죄에 대한 신고와 증언에 암수화로 이어져

범죄의 실태 파악을 저해한다. 부정확한 범죄 실태에 근거한 범죄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짐으로 인한 범죄환경의 악화를 가져옴으로써 시민의 비협조 및 악성범죄조직이 양성되는 악순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 보복범죄로 인한 범죄환경이 지속적으로 나빠짐으로 사법당국과 시민의 불신, 비협조, 시민참여의 위축, 사회비용의 증가 등 공동체의 범죄근절 노력에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단초가 되는 것이다.

## 4. 보복범죄 예방대책의 보완점 논의

### 4.1 보복범죄 방지대책의 필요성 논의

보복범죄로 인한 영향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신체, 정신 정서상 피해 및 경제적 손해 뿐 만아니라 사회적 존속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23]. 과연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에 대한 해답은 먼저 범죄자의 처벌(punishment)을 생각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범죄자로부터의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배상(restitution)의 요구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처우(treatment)를 통한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범죄환경의 순화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요구에 앞서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범죄발생 후 신고와 처벌의 형사과정에서 재패해의 방지와 신변에 대한 안전보장 즉 보복범죄 공포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는 범죄피해자 및 증인이 정상적인 국가사법정책의 작동으로 범죄피해를 인정받고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 사법기관의 보복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분석해 보면 대강 네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범죄피해자나 증인의 개인정보의 보호함으로써 범행대상의 노출을 거부하는 것이며, 둘째는 직접적인 신변보호 조치로 범법행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위협을 해소시키는 것이며, 셋째는 범죄신고자나 증인의 보복범죄로 입은 피해를 경제적으로 보상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행정적으로 원상복구시키는 것이며, 넷째는 범죄발생 이전의 생활로의 복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회복적 지원 등이라고 볼 수 있다[8].

UN의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의실현의 기본원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의 제6조 d항에 따르면, “사법기관은 피해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협박이나 보복으로부터 피해자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증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적인 보편적 사법시책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보복범죄는 발생건수와 범죄의 질적인 면에서 악화되는 현상의 나타나고 이로 인한 사회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행 형사사법정책과 제도의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실효성 문제에 대한 검토 논의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또한 우리가 지향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형사재판의 시민참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준비 중인 범죄목격자의 증언의무제의 실시에

앞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로 판단된다.

### 4.2 보복범죄 방지대책의 보완점의 제기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방지대책에 보완점의 제기는 현행 법 제도의 개선과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의식전환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사법절차의 진행과 행형절차, 출소 전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이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해자 체포에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도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한 위협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112 범죄 신고 시 부터 범죄의 고소 고발, 증인이나 목격자 진술 시 적용해야 하며, 모든 범죄피해자와 증인의 관련조서의 마지막 문항은 본인의 안전 확인 후 날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하고, 형사재판의 경우 재판절차상에 피해자나 증인의 증언이 있을 경우 재판장은 이들의 안전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 즉 증언 전에 범죄피해자나 증인에게 해당범죄와 관련한 보복범죄 위협의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재판절차를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종료 선언 직전에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게 신변위험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현행 보복범죄관련 대표적인 법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로 이법의 핵심적 내용은 보복범죄자의 형량에 관한 법률로서 범죄의 예방보다는 사후처벌에 방점을 둔 규정이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특신법)은 원범죄의 적용범위가 한정된 법으로 보복범죄발생의 원범죄 분석결과(한정된 원범죄 범위 외의 폭행:16.3%, 상해18.7%, 업무방해:14.9% 등)에 비추어 적용범위가 부적절하여 실제 보복범죄 피해자의 대부분(77.4%)을 외면한 법이다. 이에 현행 특가법에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전 보호대책과 특신법의 원범죄 보호대상을 보완하여 “보복범죄의 위험이 있는 자”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일반범죄의 모든 피해자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리라 하겠다. 또한 보복의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의 정보노출에 예외가 있으면 아니 된다. 즉 형사절차의 공소장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 및 증인의 정보기체 서류에 대한 범죄피해자(변호인 포함)의 접근을 차단하고 노출 시 보안관리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현행법과 판행을 개선하여 가명조서작성을 모든 범죄로 확대적용하고, 신원관리카드의 보안관리를 강화하여 열람 시 본인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형사사법기관의 모든 범죄의 사건 처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 위협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건의 형사절차과정에서 단계별로 가해자에게 보복범죄에 대한 경고조치를 발하는 것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이다.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에는 현재 시행 중인 신분세탁이나 신변보호대책, 별도 보호시설이나 주거지 마련 등을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확대 시행하고, 이를 위해 민간경비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GPS시스템을 활용한 선진화된 미디어 장비를 개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사법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현재 사건의 처리에 급급한 인식을 사건처리 과정에서 보복에 의한 또 다른 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법정의의 실현과 사법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죄피해자의 정보노출이나 신변위협이 방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형사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및 증인의 평온한 상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형사절차상의 모든 사법기관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재소자의 출소 전 심리검사를 통해 보복범죄 가능성을 진단하고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복범죄 발생시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 5. 결 론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의 근절은 국가 사법정책의 정상적인 작동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는 암수피해를 줄이고,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규명과 공정한 처벌을 통해, 국가사법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기초여건인 것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리인 국민 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의자 체포에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도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건의 형사절차과정에서 단계별로 가해자에게 보복범죄에 대한 경고조치를 발하는 것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이를 위해 민간경비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GPS시스템을 활용한 선진화된 미디어 장비를 개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시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 참고문헌

- [1] Sellin, Thorsten, "Enrico Ferr," *Pioneers in Criminology*, Montclair New Jersey: Patterson Smith, p. 366, 1973.
- [2] 강맹진. 김진철,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대왕사, pp. 81-88, 2007.
- [3] 전대양, '범죄대책론', 강원: 청송출판사, p. 13, 2010.
- [4] 김용우 • 최재천, '범죄피해자학', 서울: 박영사, p. 3, 2006.
- [5] G.Kaiser, 'Krimnologie', 3Auf. S.57, p 57, 1976.
- [6] 김용세, '피해자학', 서울: 형설출판사, pp. 26-29. 95-96. 70-73, 90, 93-96, 111-120, 2010.
- [7] 이윤호, '범죄학', 서울: 박영사, p. 479, 2007.
- [8] 김재민, '피해자학 -범죄피해의 예방과 회복-', 서울: 청목출판사, pp. 27-41. 8, 321, 321-324, 2012.
- [9] 김재민, '범죄피해자대책론', 서울: 진리탐구, pp. 17-23, 53-63, 2006.
- [10] 이성호 • 김상균 • 신석환, '범죄피해자학', 서울: 21세기사, p. 35, 2005.
- [11] 허경미, '피해자학', 서울: 박영사, pp.7-8, 2011.
- [12] 충청매일, "법원'보복살인 못 막은 경찰징계 정당'", 2014.2.8.자, 사회면.
- [1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5항[법률 제11305호, 2012.2.10. 일부개정].
- [14] 김지선 • 안성훈 • 장다혜추 • 지현, "보복범죄의 원인 및 분석을 통한 피해자 신변보호강화 방안 연구", 대검찰청 연구과제 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 4, 2014.
- [15] 조선일보, "날 고소해? 가만 안둔다" 보복범죄 기승, 2015.3.21.자, 사회면.
- [16] 조선일보, "미 범죄수사 보복범죄로 지방검사 피격" 2013.04.02.자, 사회면.
- [17] 뉴스1, 범조인 테러"사법 신뢰 회복 필요", 2015.6.10.자 보도.



- [18] 서울신문, “보복 무섭고 신고해도 안오고..눈감은 목격자들”, 2011.9.30. 사회면.
- [19] NEWSIS, “검, 보복범죄자 ‘구속 격리’... 범죄피해자는 ‘밀착보호’”, 2013. 7.28.자.
- [20] 연합뉴스, “경찰, 보복범죄 우려 범죄피해자 ‘가명조서’ 확대”, 2014.02.11. 보도입력.
- [21] 대검찰청, 보도자료 2012.4.16.배포.
- [22] 김근태, “보복범죄의 피해자 등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77호, p. 123, 2015.
- [23] Harvey, Wallace & Roberson, ‘Victimology -Legal, Psychological and Social Perspectives’, Printice Hall, p. 47, 2011.

---

[ 著 者 紹 介 ]

---



최 기 남 (Choi Kee Nam)  
 1979년 2월 서울대학교 학사  
 2000년 8월 고려대학교 석사  
 2005년 2월 경기대학교 박사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mail : cknam11@naver.com